

행정구역경계조정(안) 심사보고서

1992. 5. 15
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나. 제안일자 : '92. 5. 7
- 다. 회부일자 : '92. 5. 12
- 라. 상정일자 : '92. 5. 13

2. 제안설명요지

지역개발사업 및 도로개설등으로 동일한 지역이 2개이상의 행정동으로 분할된 지역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경계 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지역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일부지역에 대하여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의원으로 하여금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됨.

4. 토론요지

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행정구역 경계 조정시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.

- 현재 조정하는 6개동 이외 나머지 11개동에 대해서도 경계 조정 작업을 즉시 하도록 하자는 의견
 - 류광현 위원
 - 달서구 전체의 동간 경계조정 작업을 경계조정 작업시 구의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 하도록 하자는 의견
 - 이종택 의원
 - 월성단지내 효성여고 옆 단독주택지를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경계조정을 하도록 하자는 의견

- 이재영 위원
 - 동경계 조정시 큰길을 중심으로 하여 동세가 사각형 모형으로 되도록 하자는 의견
- 이장우 위원
 - 행정구역 조정시 구의원 및 원로분이나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, 종합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전체를 동시에 조정하자는 의견
- 박용갑 의원
 - 동경계 조정시에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지금이라도 달서구관내 동경계를 전면 재조정하고, 시행시에는 사전에 공청회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실시토록 하자는 의견